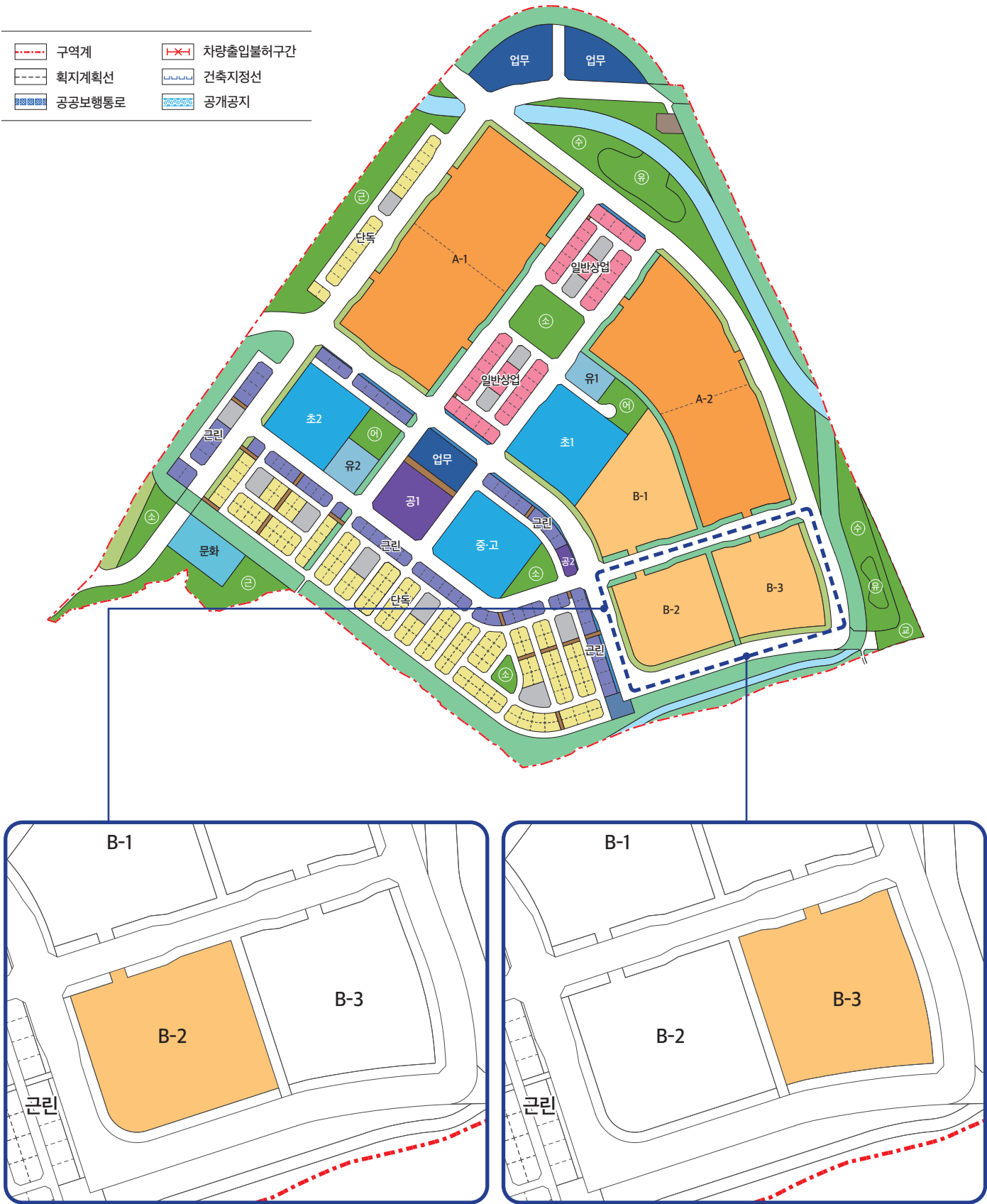


공동주택용지(B-2, B-3)



※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<실시계획 3차 승인 기준>
※ 토지이용계획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급대상 토지목록(공동주택용지)

블럭번호 가구번호	획지위치	건폐율	허용 용적률	면적(m ²)	최고층수	단가(원/m ²)	공급예정금액(원)	입찰보증금(원)
B-2		30%	200%	23,976	평균 18층 이하	2,065,000	49,510,440,000	2,475,522,000
B-3		30%	200%	23,736	평균 18층 이하	2,035,000	48,302,760,000	2,415,138,000

※ 평균층수는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(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)를 기준면적(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당해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)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

허용 및 불허용도(공동주택용지)

허용용도	• 아파트 및 부대·복리시설 • 부대·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13호, 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대·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.
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공동주택용지 기준 용적률 완화항목

구분	인센티브 적용내용(권장 / 규제)	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
공동주택용지	중층(B2~B3)	공공조경 설치 : 지침 준수 시(규제)	120	200
		통경구간 확보 : 지침 준수 시(규제)		
		건축한계선 확보 : 지침 준수 시(규제)		
		연도형 상가 확보 : 지침 준수 시(권장)		
		녹지면적률 확보 : 지침 준수 시(권장)		
		지상 1층 주차장 : 지침 준수 시(권장)		
		우수활용시설 설치 : 지침 준수 시(권장)		